

간이투자설명서

유진투자증권 제590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4등급), 원금지급형

정부가 본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률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유진투자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Stable), 2013년 09월 30일 한국기업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장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장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동 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9.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위험등급의 의미

*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투자대상자산의 종료 및 위험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등급 분류	매우높은위험(1등급) – 높은위험(2등급) – 다소높은위험(3등급) – 보통위험(4등급) – 낮은위험(5등급) – 매우낮은위험(6등급)	
	*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일반적으로 상품의 위험도는 함께 증가합니다.	
위험등급별 유의사항	위험등급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높은위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위험도 책정 기준	당사 ELB의 투자위험도는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험도(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지도를 따름) 중 위험도 4단계인 보통위험과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1. 상품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유진투자증권 제590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4등급) / 원금지급형)
기초자산	한국전력 보통주
모집(매출)총액	3,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 수량	300,000증권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청약단위	10,000원
청약기간	청약 시작일 2024년 08월 27일
	청약 종료일 2024년 08월 27일 (청약기간 이후 청약 취소 불가)
납입일	2024년 08월 27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8월 27일
발행일	2024년 08월 27일
만기일	2025년 08월 27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금액 만을 발행하고, 모집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분배정합니다. 단, 총 청약금액이 총 1억원에 미달되는 경우 본 증권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본 간이투자설명서 제출일 전일 기준 10,001.0600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간이투자설명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단순평균한 가격에 당사가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해지비용은 가산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한국전력 보통주 : (32.61500%)

※ 변동성 산출기준: 250일 영업일기준 시장 내재변동성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한 해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간이투자설명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권리의 내용

(1) 평가일, 관찰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8월 27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5년 08월 25일
- 최종관찰일 : 2025년 08월 25일
- 만기일 : 2025년 08월 27일

※ 기준가격 결정일은 해당 거래소가 위치한 현지 시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이 본 설명서상 정의된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이 해당 기준가격 결정일로 됩니다.
 ※ 기준가격 결정일에 어떠한 기초자산가격이 발표되지 않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기준가격 결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산 전부에 대한 기준가격 결정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기준가격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2) 손익구조

구분	내 용	연 수익률(세전)
만기 상환	① <u>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이상인 경우</u>	3.901%
	② <u>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미만인 경우</u>	3.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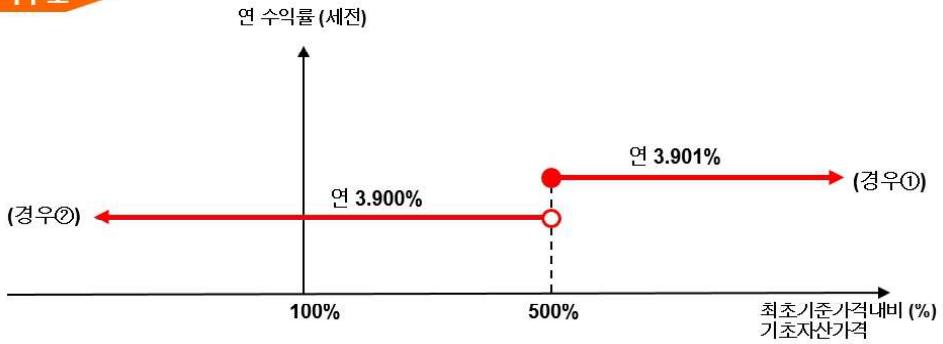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수령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최소이익액 및 최대이익액

구 분	내 용	연 수익률 (세전)
최소이익액	본 증권의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미만인 경우 최소이익이 발생하며, 최소이익액은 [액면잔액 X (100%+3.900% X n/365) (세전)]입니다. ※ n=365 (발행일(포함)로부터 만기일(불포함)까지 달력일수)	3.900%
최대이익액	본 증권의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이상인 경우 최대이익이 발생하며, 최대이익액은 [액면잔액 X (100%+3.901% X n/365) (세전)]입니다. ※ n=365 (발행일(포함)로부터 만기일(불포함)까지 달력일수)	3.901%

3. 손익구조 그래프

예상손익구조



* 상기 수익률은 세전수익률입니다.

4.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수익률(연)	빈도(회)	비율
3.901 %	0	0.00%
3.900 %	4,982	100.00%
합 계	4,982	100.00%

제590회 ELB 수익률 표

주1) 위 그래프는 투자시점을 200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8월 21일까지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3년 07월 01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연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4,982회)

주3) 위 표와 그래프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진투자증권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교란사유 발행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항 목	내 용
중도상환 신청방법	<u>발행인 본·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u>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발행일 익 영업일부터 <u>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u>
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	만기평가일과 만기평가일 직전 영업일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불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 익 영업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u>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u> 에 해당하는 날
중도상환 신청 단위	1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가격	<p>(1)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신청금액 + (중도상환신청금액 × 2.900% × 경과일수/365)}로 계산하며, 경과일수는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신청일까지입니다.</p> <p>(2) 단,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금액은 {중도상환신청금액 + (중도상환신청금액 × 3.900% × 경과일수/365)}로 계산으며, 경과일수는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신청일까지입니다.</p> <p>* 특별중도해지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 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③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④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⑤ 수탁자의 사임 ⑥ 퇴직연금제도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⑦ 수수료의 징수 ⑧ 연금지급 및 연금상품 가입을 위한 운용자산 변경 ⑨ 기타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p>- <u>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중도상환가격의 비율)</u>을 교부해 드립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p>-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중도상환 가격은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청구일까지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약정된 금리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p> <p>-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신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p>

6. 투자자 유의사항

일반적 투자위험	<p>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복잡한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p>
-----------------	--



파생상품적 성격에 따른 위험	<p>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u>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u></p>
발행사의 신용과 관련 한 위험	<p>본 증권은 <u>유진투자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증권</u>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도에 상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u>유진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u> 따라서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u>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유진투자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Stable), 2013년 09월 30일, 한국기업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u></p>
환금성 제약의 위험	<p><u>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을 예정</u>이므로 증권 보유자는 장외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양도하거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등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본 증권보유자에게 부여된 발행회사의 권리행사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u>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u></p>
과세 관련 위험	<p>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u>액면금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u>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조세가 감면되지 않는 한, 발행인은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액면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른 15.4%의 과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u>또한 수익금액 발생으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u></p>
권리내용의 변경 및 조기종결위험	<p>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u>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u>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p>

※ 본 증권은 유진투자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발행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상장폐지로 인한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 중지사태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 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며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자료 열람 요구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5가지 판매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서면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혹은 영업점에 문의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0일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9.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자금의 사용목적

유진투자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1. 발행인이 영위하는 사업목적

유진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아 영위하고 있습니다.

12. 발행인의 요약 재무정보

발행인의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8월 14일에 제출한 유진투자증권 「제72기 반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사항

- * 유진투자증권은 관련 상품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해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유진투자증권 고객센터(1588-6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직원 확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점명: _____ (☎) 설명직원(직위): _____ () (인/서명)

년 월 일

본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증권의 모집(매출) 또는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원하는 투자자들께서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신고추가서류 사본 등 열람장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이 간이투자설명서의 일괄신고추가서류는 2024년 08월 23일자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간이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